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81호(號) 1927(昭和 2)년 12월 6일 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19호(號)

1925(大正 14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(號)에 의하여 1923(大正 12)년 8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(南滿洲鐵道株式會社) 사고(社告) 제88호(號) 당사(當社), 철도성선(鐵道省線) 간(間) 화물연대운수규칙(貨物連帶運輸規則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7년(昭和 2)년 12월 6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자작(子爵) 사이토 마코토(齋藤實)

본칙(本則) 제2조(條)제1호(號)를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와 철도성선(鐵道省線) 간(間: 부산 경유[釜山經由])

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 각(各) 역(驛: 함경북부선[咸鏡北部線] 및 청진선[淸津線] 각[各] 역 [驛]과 간이역[簡易驛] 및 부산역[釜山驛]을 제[除]함

철도성선(鐵道省線) 각(各) 역(驛: 덕도선[德島線], 고지선[高知線] 및 작비선[作備線]을 제[除]함)

동(同) 제2조(條)제1호(號) 철도성선(鐵道省線)의 행(行) 중(中) 「대군선(大郡線)」을 삭제(削除)함.